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33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 윤준병・박용갑・정동영

박희승 · 김윤덕 · 박민규

서영교・이성윤・허 영

문대림 · 김동아 · 조계원

송옥주 • 이병진 • 신영대

김우영 의원(16인)

제안이유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특히 청년 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고질적인 병폐임.

그러나, 현행법상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채용비리 죄에 대한 개념과 방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의 업무방 해죄라는 죄명으로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

더욱이, 업무방해죄의 경우에서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입사 지원자 등이 아닌 해당 기업 자체 또는 해당 기업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의 구제방안과 채용비리 벌칙 규정 등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채용절 차상의 평등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건 전한 채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현행법 제명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나. 현행법에 채용비리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채용강요 등'을 더 넓은 의미의 '채용비리'로 변경하고,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함(안 제4조의2 및 제16조제1항 신설).
- 다. 구인자가 채용비리를 원인으로 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채용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 라.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단계별 채용과정에서의 응시기 회 부여, 구인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구인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확보하기"를 "확보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하기"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상의 평등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채용 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중 "채용강요 등"을 "채용비리"로 하고,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 "행위"를 "행위(이하 "채용비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채용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구직자의 친족 및 지인 등을 고려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 4. 그 밖에 채용과정에서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 정되는 행위

제4조의4 및 제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채용의 취소) ① 구인자는 채용절차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사실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리를 원인으로 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 우 구인자는 채용을 취소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취소의 기준 및 소명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의5(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 등) ① 구인자는 채용비리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피해자가 단계별 채용과정(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서 피해를 입은 단계를 합격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단계의 응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채용비리의 피해자는 구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구인자는 채용비리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용비리의 발생 경위·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구인자는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재발방지 계획을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채용비리 사실의 기록, 보존 및 재발방지 계획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용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 제1조(목적) -----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 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확보하고, 채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 용비리를 방지하기----규정을 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상의 평 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 한 채용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 제4조의2(채용비리의 금지) -----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행위(이하 "채용비리"라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채용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 교, 구직자의 친족 및 지인 등을 고려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을 채용하거나 채용 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 설>

<신 설>

<신 설>

4. 그 밖에 채용과정에서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는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4조의4(채용의 취소) ① 구인자 는 채용절차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사실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리를 원인으로 하여 채용시험에 합 격한 사람에 대하여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인 자는 채용을 취소하기 전에 대 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소 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취소의 기준 및 소명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5(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 등) ① 구인자는 채용비리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경우 그 피해자가 단계별 채용과정(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필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서 피해를 입은 단계를 합격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단계의 응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

제16조(벌칙) <신 설>

(생 략)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 | 제17조(과태료) <삭 제> 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

다.

- ② 채용비리의 피해자는 구인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구인자는 채용비리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용 비리의 발생 경위·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구인자는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재발방지 계획을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 ⑤ 채용비리 사실의 기록, 보존 및 재발방지 계획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벌칙) ① 제4조의2를 위반 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 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 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 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 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